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

발 의 자: 김근한·정지원 의원(2인)

찬 성 자: 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  
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상호  
이정희·이지연·장미경 의원(11인)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종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다.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 라.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 마.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 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4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경관법」

2) 「경관법 시행령」

나. 부서검토: 미래도시전략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구미시 경관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회랑 확보방안
8.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

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제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및 경관 형성에 관한 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위치도,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3. 연차별 집행계획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5. 재원 조달 방안 및 이행계획서
6. 사업의 기대효과
7. 기타 경관사업에 필요한 내용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 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 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구미시의회 의원

마.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사업비의 집행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장 경관심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총사업비 100억원(보상비 제외) 이상의 공원 조성 및 조경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상 10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상 16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존 경관심의 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3개층 이상 층수 변경 또는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3개층 이상 변경 또는 기존 연면적의 30 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건축물
  - 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2.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등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해 심의를 받은 경우(단, 현상공모, 제안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장(같은 대지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
    4. 창고시설(단, 물류터미널이 포함된 경우 및 2층 이상의 층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5. 농어업용 축사, 작물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구미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⑨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 초과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의 경관자문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자문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경관심의에서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상공모, 제안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친 경우
  - 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31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29조, 제30조에 의한 경관 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호 규정에 의한 경관자문 신청은 별지 제7호, 제8호서식에 의한 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 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외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서류

②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구미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5.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2. 「경관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① 제23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경관위원회

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경관자문 대상 시설물(제30조제2호 관련)**

**□ 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종 류
공공건축물	<p>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구미시에 건축 협의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건축물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p> <p>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체 건축물</p> <p>2) 그 외 지역은 신축 50제곱미터 이상, 증축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경우</p> <p>나. 가설건축물 등 사용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제외</p>
민간건축물	<p>가. 민간이 건축하는 아래 건축물</p> <p>1)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상 3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경우</p> <p>2)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p> <p>3) 증축의 경우 2개층 이상 층수 변경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경우(별동 증축만 있는 경우 1), 2) 기준에 따름)</p> <p>나.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p> <p>1)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체 건축물</p> <p>2) 그 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p> <p>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같은 대지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li> <li>- 창고시설(단, 물류터미널이 포함된 경우 및 2층 이상의 층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li> <li>- 축사, 작물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농어업용 건축물</li> <li>- 가설건축물 등 사용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사용하는 건축물</li> <li>-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건축신고 대상만 해당)</li> </ul>
변경사항	<p>가. 경관자문을 거친 건축물이 2개층 이상 변경 또는 연면적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p> <p>나.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2개층 이상 변경 또는 기존 연면적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p> <p>다. 그 외 건축물 외부 형태, 재료, 색채 등이 변경되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공공시설물 등

- 총사업비 5,0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 총사업비 1억원(보상비 제외) 초과 경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보상비 제외) 초과 공원 조성 및 조경 사업
- ※ 기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유지보수 사업은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경관</span> <div style="text-align: center;">             심의 <input type="checkbox"/>              자문 <input type="checkbox"/> </div> <span style="font-size: 2em;">신청서</span> </div>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사업개요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자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신청내용					
『경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미시 경관조례』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신청기관</span> <span>성 명</span> <span>(인)</span> </div>					
<b>구미시장 귀하</b>					
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 경 관 자 문 신 청 서

경 관 자 문 신 청 서					
사 업 명					
사업부서	부 서 명				
	담당(자)		전 화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및 디자인 개념 등 기재</li> </ul>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p>「경관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구미시 경관 조례」 제30조제2호,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기관(부서) (인)</p> <p><b>구미시장 귀하</b></p>					
<p>첨부서류 : 1. 기본설계도서(시설계획도, 평·단면도, 입면도, 구조물도, 색채 등 표시) 2. 주변현황사진, 조감도 또는 모형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p>					

# 관계법령

##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 ④ (생략)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 제4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 ③ (생략)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

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이하 “경관협정운영회의”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행정시·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 3. (생략)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 ④ (생략)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미래도시전략과

조 례 명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관법」</li><li>▪ 「경관법 시행령」</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li><li>○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li><li>○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li><li>○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li><li>○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li><li>○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4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 대상 등을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관리에 기여</li><li>○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li><li>○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li></ul>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안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구체적 산출이 어려움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건별 사업 규모 및 내용이 다르므로 재정 지원 범위 및 금액 상이

#### 4. 작성자

- 미래도시전략과 도시경관팀 이유찬(☎054-480-2594)